

청년드림대출 거래조건 안내

(2013.10.31부터 신규 중단)

*2021년 10월 25일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업무의 단계적폐지 결정에 따른 은행이용자보호계획
안내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은행이용자보호계획> 은행이용자보호계획안내> 대출상품> 씨티 비즈니스 대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 거래 약정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명 : 청년드림대출

2. 적용약관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3. 대출기간 : 1년, 4년

4. 대출신청 자격요건 : 만20세 이상 만 39세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

※ 단, 당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급금 포함)보유자,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거래정보 혹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및 은행이 정한 사유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운전자금)

6. 대출형식 : 개별거래방식

7. 기한연장 : 가능

- 1) 연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연장이 안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 2) 만기가 지난 후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대출상환방법

- 만기 1년 : 만기일시상환
- 만기 4년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균등상환은 반기별 연 2회)

9.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100%,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10. 대출이자율 : 최대 5.0%이하

조달금리에 신용원가/업무원가/제비용/정책마진/가산(감면) 금리를 감안한 가산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금리는 고정금리부와 변동금리부로 나뉘며, 고정금리라 함은 원칙적으로 여신만료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변동금리는 약정기일 이내라 하더라도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신 약정서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이율은 거래영업점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종류

- 단기COFIX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주 3영업일에 고시하며,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직전 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3개월마다 변경
-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 :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15일에 고시하는(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신규 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 취급액 기준의 경우 매 6개월, 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
- 금융채3개월물(6개월물,1년물) 기준금리 : 여신실행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매6개월,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금융채AAA 종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3개월(6개월, 1년)마다 변동 됩니다.
- CD수익률 :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CD수익률의 산출이 중단되는 경우 그 대체금리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로 합니다.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는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금리로서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므로, CD수익률의 대체금리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은행은 CD수익률의 산출이 중단됨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기로 합니다. 또한, 은행은 홈페이지에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금리 및 선정근거, 적용 시기 등 전환절차와 일정을 안내하기로 합니다.

11.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1)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2)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를 적용합니다.
-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4.9%로 합니다.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자율+연 2.0%를 적용합니다.

12.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1)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금리)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2)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기간 만료일 도래 전이라도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3)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는 해당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4) 당좌대출 및 통장대출의 경우 한도 초과지급 및 이자 원가 등으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5) 연체이자 부담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따릅니다. (다만,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신규 계약, 갱신/연장된 계약에 한해 해당 됩니다)

13. 연체이자의 제한 등

- 1) 채권금융회사등은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 채무자와의 기존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 이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10.17)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합니다.

14. 이자계산 방법 등

- 1)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한도대출의 경우 대출금 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이자가 부과됩니다.
- 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납부) 방법
 - 매월 대출실행 해당일 또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약정이수일에 자동이체계좌로 등록된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납부합니다.
 -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원금 중도상환시에는 1만원 단위로 거래 가능합니다.
 - 휴일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서 대출상환 및 이자납입이 가능합니다.

15.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보증협약 기준)

16. 필요서류

- 1) 기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정관
- 2) 담보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3) 심사관련 서류
 - 기업체현황(당행양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사 확인 세무조정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17. 부대비용

- 1)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관련 보증료 : 0.3% (고객부담)**

18. 금리인하요구권

- 1)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되거나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등급 상승,재무상태개선,특허취득,담보제공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대출계약철회권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영업점 방문, 우편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는 철회 기한이 있으며,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이 기록에서 삭제됩니다.(대출 기록은 철회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삭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실행금액과 철회신청 금액(원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금융소비자는 당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22.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24.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위법계약해지권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거절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26. 원금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개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답일/ 별도지정일에 대출금입금계좌/ 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이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계약해지 방법

개별대출 계약 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계약 해지: 고객이 한도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28.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겐지(Guernsey), 저지(Jersey), 모나코(Monaco), 산마리노(San Marino), 바티칸(Vatican) 및 맨섬 (Isle of Man) 및 영국(UK)의 개인 거주자에게 본 상품을 제안하지 않으며, 본 상품의 신규를 제안, 권유, 유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9.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 안내

- A.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요 불이익사항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 연체 정보등 등록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15. 중도상환수수료 등, 연체이자율 및 부과사유에 대해서는 11.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12.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B.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기한의 이익 상실 사례)**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 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대출기한이 이르게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C.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
- 고정금리 : 여신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여신실행일 현재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해당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 대출 실행시부터 고정금리 약정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약정기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등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되어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D. 연체정보등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정보등'이 등록됩니다.

30. 기타내용

- A.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18 백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B. 자세한 상품안내 및 상담은 1588-7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당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503-02-014 (2025.03.12 ~ 2027.03.11)

* 상기 유효기간은 본 상품안내의 게시기간이며, 상품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본 상품 안내는 2025년 3월 12일 기준이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